

---

# 의안설명서

제18기 테라리소스 임시주주총회

일 시 : 2014년 04월 03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 목 차

I. 개회사

II. 국민의례

III. 출석주주 및 주식수 보고

IV. 총회성립선언

V. 의장인사

VI. 회의목적사항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2 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 3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4 호 의안 : 액면미달 발행 유상증자 승인의 건

제 5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 6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VII. 폐회선언

---

## 의안설명서

### **제 1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안내용>

상법 제382조, 정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이사들의 선임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 사내이사 RICK CHO
- 사내이사 박형섭

### **제 2 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안내용>

상법 제409조, 정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감사의 선임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 감사 전홍조

### **제 3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안내용>

상법 제4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 일부 변경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별첨 '정관의 변경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제 4 호 의안 : 액면미달 발행 유상증자 승인의 건**

<제안내용>

상법 제417조,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액면미달 발행 유상증자를 승인 받고자 합니다.

- 신주의 종류 : 보통주 241,135,466주
- 신주발행가액 : 25원/주
- 증자방식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제3자배정

**제 5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안내용>

상법 제388조 및 정관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보수한도를 다음과 같이 승인 받고자 합니다.

구분	전기(제16기)	당기(제17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이사 4명(사외이사1명)	이사 4명(사외이사0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700백만원	400백만원

**제 6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안내용>

상법 제415조 및 정관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 선임의 건을 다음과 같이 승인 받고자 합니다.

구분	전기(제16기)	당기(제17기)
감사의 수	감사 1명	감사 1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00백만원	100백만원

<별첨>

### 정관의 변경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10조 (신주인수권)</p> <p>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lt;신설&gt;</p> <p>② 생략</p> <p>1. ~ 5. 생략</p> <p>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① 현행과 동일</p> <p>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② 현행과 동일</p> <p>1. ~ 5. 현행과 동일</p> <p>&lt;삭제&gt;</p>	<p>- 이사회 결의만으로 단주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p> <p>-상장회사 해당 법률에 따른 규정을 삭제함.</p>
<p>제11조 (일반공모 증자 등)</p> <p>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따라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제1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0을 초과할 수 없다.</p> <p>&lt;신설&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① 이 회사가 일반공모증자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상장회사 해당 법률에 따른 규정을 삭제함.</p> <p>- 이사회 결의만으로 일반공모 증자 등의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p>
<p>제23조 (소집통지 및 공고)</p> <p>① 생략</p>	<p>① 현행과 동일</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시 내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 신문과 디지털타임즈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p> <p>③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와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p> <p>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542조의4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의 경영참고사항 등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에 게재하고 상장회사의 본점 및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p>	<p>&lt;삭제&gt;</p> <p>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와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p> <p>&lt;삭제&gt;</p>	<p>-상장회사 해당 법률에 따른 규정을 삭제함.</p> <p>-조문 정리</p> <p>-상장회사 해당 법률에 따른 규정을 삭제함.</p>
<p>제33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p>	<p>&lt;삭제&gt;</p>	<p>-사외이사 필수 조문 삭제</p>

---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①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사외이사를 1인 이상 들 수 있다.	